

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

(제정) 2006-09-29 조례 제 2949호
(일부개정) 2008-01-01 조례 제 3049호
(일부개정) 2011-06-10 조례 제 3367호
(일부개정) 2011-10-21 조례 제 3398호
(일부개정) 2012-03-30 조례 제 3445호
(일부개정) 2016-01-01 조례 제 3877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4조·제45조·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8.1.1., 2016.1.1.>

제2조(연간 회의 총일수)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로 한다. 다만,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0.21.>

제3조(회기)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회의일수는 60일이내로 하며,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. <개정 2011.10.21.>

제4조(집회일)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·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해당 연도에 처음 구성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12.3.30., 2016.1.1.>

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8일에 집회한다. <개정 2011.6.10., 2012.3.30., 2016.1.1.>

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·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. <개정 2012.3.30.>

제5조(의회운영 기본일정)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의원과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,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.

제6조(회의운영 등)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승인을 하고,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. <2016.1.1.>

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·의결하고,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. <2016.1.1.>

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, 도민의 의견수렴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7조(준용규정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 조례의 폐지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「충청북도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(2008.1.1 조례 제3049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6.10 조례 제3367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10.21 조례 제3398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2.3.30 조례 제3445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5.1.1 조례 제3877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